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06호)

2026.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수리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간주 ...	2
가. 「동물보호법」상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제도	3
나.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협의절차 및 효과 ...	6
다. 검토의견	9
IV. 입법의 재정영향	14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2. 10.

다. 회 부 일 : 2026.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며, 현재 보호두수별로 신고 기한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입지하는 등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보호동물의 존재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철거·이전 등을 통해 단시일 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조속한 신고의무 이행을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수리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간주

개정안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보호시설 중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보호시설에 대하여 특정 요건¹⁾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리하도록 하고,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보호시설 중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보호시설의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①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 세워진 시설일 것, ②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농지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할 것, ③ 농지복구계획에 따른 복구비용을 예치할 것, ④ 해당 농지에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현행	개정안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 세워진 시설일 것 2.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농지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할 것 3. 농지복구계획에 따른 복구비용을 예치할 것 4. 해당 농지에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가. 「동물보호법」상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제도

「동물보호법」은 종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①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②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로 지정·위탁하는 것에 대하여만 규정하고,²⁾ 그 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음.

2) 「동물보호법」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동물의 보호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의 애니멀 호딩³⁾ 등의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 전부개정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민간 동물보호시설에게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법 제37조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위임을 받은 현행법 시행령은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하면서, 보호동물 마릿수에 따라 신고 기한을 차등 적용하였음.

【 보호동물 마릿수에 따른 신고 기한 차등 적용 】

차등 적용 신고 기한		신고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
공포 후 2년간	공포한 날(2023년 4월 27일) ~ 2025년 4월 26일	보호동물 마릿수가 <u>400마리 이상</u> 인 경우 신고
공포 2년 후 1년간	2025년 4월 27일 ~ 2026년 4월 26일	보호동물 마릿수가 <u>100마리 이상</u> 인 경우 신고
공포 3년 후	2026년 4월 27일 ~	전체 적용(보호동물 마릿수가 <u>20마리 이상</u> 인 경우 신고)

※ 자료: 「동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35호) 부칙 제3조를 재가공

이에 따라, 2026년 4월 27일부터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차등 없이 적용되어, 보호동물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모든 민간동물보호시설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등을 신고하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동물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그 신고를 검토한 후 수리하게 될 것임.

3) Animal Hoarding,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런데, 현재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는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신고를 거치지 않고⁴⁾ 농지에 입지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시설인 상황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전체 민간동물보호시설 171개소의 9.94%인 17개소만이 신고를 완료한 상태이고, 미신고 상태인 107개소 중 「농지법」 위반 시설은 54.2%인 5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현행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의 차등 적용 종료일(4월 27일)의 도래가 예정됨에 따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는 이와 같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임.

4) 「농지법」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신고를 요구하고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의 경우, ①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허가(제1항)”와 ② 「농지법」 외 다른 법률의 의제, 간주 등 규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협의(제2항)”로 구분됨

나. 「농지법」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협의절차 및 효과

「농지법」은 현행 헌법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⁵⁾ 농지를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농지를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①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신고(「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 또는 ②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신고(「농지법」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중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는 농지전용 제도와는 달리 사용 후 농지의 원상회복이 전제되는 제도로서,

①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염해농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 「농지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련 부서에서 이를 심사하게 되고,

② 그 외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절차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주된 인·허가 등을 소관하는 행정청이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타용도 일시사용을 협의하게 됨.

5)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개정안 관련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규정 】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개정안의 경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의 수리권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권자와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본래 동일 행정청 내에서 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농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 협의회가 요구될 사항으로 보임.

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본래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농지 관련 부서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 별도로 허가가 발급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므로,

동물 관련 부서를 통하여 수행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절차를 거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수리 과정에서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동일 기관 내 농지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요구되는 것임.

만약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는 반드시 수리되어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는 경우 곧바로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완료가 간주되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됨.

이를 통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은 그 시설이 소재한 농지를 일정 기간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외의 동물보호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검토의견

현행법령에 따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의무 차등 적용이 2026년 4월 27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나, 현재 다수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를 마치지 못한 상황임.

이와 같은 미신고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지법」을 위반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어 발생하게 된 것임을 고려할 때, 그 해결을 위하여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부지로 이전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단시일 내에 스스로 위법 사항을 해소할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입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령에 따른 신고의무가 차등 없이 적용되는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보호시설이라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⁶⁾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6)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안을 통하여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완료를 간주하는 경우,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5년(연장 시 8년) 이내의 타용도 일시사용⁷⁾을 통하여 위법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되며, 그 기간 내에 시설의 이전 등을 준비할 수 있어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요건 】

호	요건	「농지법」상 관련 규정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 세워진 시설일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7) 「농지법 시행령」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5년 이내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년

호	요건	「농지법」 상 관련 규정
2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농지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할 것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③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 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 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농지복구계획에 따른 복구비용을 예치할 것	
4	해당 농지에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 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 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 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 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 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3.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 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아니한 자

※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조속한 정
작으로 동물학대 예방 및 보호환경 개선 등 유실·유기동물 보호·관
리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자구정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법」에 따라 정당하게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인용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그런데, 「농지법」 제36조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협의)⁸⁾를 한 경우 역시 「농지법」에 따라 정당하게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농지법」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 일시사용 기간,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복구비용 납부 시기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안 제3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단순히 농지복구계획에 따른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⁹⁾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률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⁰⁾

문 의 처
02)6788-5416

9)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